

「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□ 「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제2022-39호, 2022.7.7.)

2. 개정사유

-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 중 체납기준 명확화
- ② 관련 고시 변경 등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

3. 주요 개정내용

-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 중 체납관련 예외사유 인정범위 확대(제3조제2항)
 - (현행)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 → (개정)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,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추가
- 신용담보 관련 고시 변경에 따른 용어 현행화(제9조제4항)

변경 전	변경 후
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	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
신용담보업체	일괄납부업체
신용담보한도액	일괄납부한도액

- 일시적 경영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효과 확대를 위한 ‘월별납부한도액’ 관리 방식 조정 (제11조제3항 및 제4항)
 -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세액은 월별납부한도 잔액에 가산
- 고시 개정에 따른 서식 현행화 및 변경신고 의무 사전 안내문 추가(별지 제3호 및 제7호 서식)

□ 기타 용어의 정비(제6조제3항, 제16조제2항, 별지 제6호 서식)

○ 납세고지 → 납부고지

4. 전문 및 신규 조문 대비표 : “붙임” 참조

5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

6. 시행일자 : 2023. 0월

7. 의견제출 방법

○ 제출처 : 관세청 세원심사과

○ 담당자 : 신상애 관세행정관(042-481-7644)

○ 제출기한 : 2023. 00. 00.

○ 제출방법 : 이메일(shinsang@korea.kr), 팩스(042-481-7869)